

제2023-42호 2023년 5월 9일(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1872호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여수시 조례 제1873호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바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여수시 조례 제1874호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8
○ 여수시 조례 제1875호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13
○ 여수시 조례 제1876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여수시 조례 제1877호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여수시 조례 제1878호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여수시 조례 제1879호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여수시 조례 제1880호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여수시 조례 제1881호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50
○ 여수시 조례 제1882호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54
○ 여수시 조례 제1883호	여수시 이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 여수시 조례 제1884호	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70
○ 여수시 조례 제1885호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74
○ 여수시 조례 제1886호	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80
○ 여수시 조례 제1887호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83
○ 여수시 조례 제1888호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88
○ 여수시 조례 제1889호	여수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2
○ 여수시 조례 제1890호	여수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지원 조례	95
○ 여수시 조례 제1891호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98
○ 여수시 조례 제1892호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2
○ 여수시 조례 제1893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회 람									
--------	--	--	--	--	--	--	--	--	--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 월 9 일

여 수 시 장 2023.5.9



여수시 조례 제1872호

붙임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을 “**여비 지급**” 으로 한다.

별표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당초]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개정]

국내여비 지급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규정은 2023년 3월 2일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u>운임과 숙박비</u>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4조(여비의 지급) ----- ----- <u>여비</u>- ----- -----.</p>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2023년 5 월 9 일

여 수 시 장 조경민



여수시 조례 제1873호

붙임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73호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당초]

국내여비 지급범위(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지 급 기 준 액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 동 차 운 임	현 지 교 통 비 (1일당)	숙 박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50,000 그 밖의 지역 130,000)	25,000

[개정]

국내여비 지급범위(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지 급 기 준 액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 동 차 운 임	현 지 교 통 비 (1일당)	숙 박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50,000 그 밖의 지역 130,000)	25,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규정은 2023년 3월 2

일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 월 9 일

여 수 시 장 조경익



여수시 조례 제1874호

붙임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1부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양성(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사업 또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여주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침) 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증진, 성인지 예산 수립·활용 및 성인지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실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할 수 있다.

제6조(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 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 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 제작

을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추진상황 공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향상을 위하여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여수시장

정기영 인



여수시 조례 제1875호

붙임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직자”란 여수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 월 9 일

여 수 시 장 정경민



여수시 조례 제1876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제4조(여비의 지급)”으로, “운임과 숙박비는”을 “여비는”으로 한다.

제5조 4호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를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로 한다.

[별표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4조 관련)

현행						개정안							
(단위 : 원)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 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여야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시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율로 지급한다.						비고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은 2023년 3월 2일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민안전
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 월 9 일

여 수 시 장

조기경



여수시 조례 제1877호

붙임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8조에 따라 여수시 관할구역 내”를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로, “주민을”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시민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2 조 (정 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여수시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4. -----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 ----- 사람을 -----.
제3조(가입대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조(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시민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여 수 시 장

2023/11/20



여수시 조례 제1878호

붙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항 중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용자조건) 제1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 ----- -----.</p>
<p>제3조(기금의 설치) ①~②(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 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2028년 12월 31일</u>----- -----.</p>
<p>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2년으로 한다.</p> <p>②~③(생략)</p>	<p>제10조(융자조건) ① ----- ----- ----- -----.</p> <p>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여수시장 2023/5/9



여수시 조례 제1879호

붙임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따라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를 “따른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 및”로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및 배우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함.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배우자(이하 “미망인”이라 한다)”를 “배우자”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미망인에게 미망인”을 “배우자에게 배우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만85세”를 “85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참전명수당과 미망인”을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배우자”로,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하여 지급받는”을 “지급받는”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3조 단서”를 “제3조”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한다.

조례 제1555호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과 본문 중 “미망인”을 “배우자”로 한다.

서식1. [별지 제1호의1서식]은 삭제한다

서식2. [별지 제1호의2서식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서식1.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로 변경 한다

서식3.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서식2.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변경한다

서식4.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를 서식3.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참전유공자 V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참전유공자 V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 및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 유공자(이하 “유공자” 라 한다) 및 배우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함.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및 그 유족인 배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유공자 등에

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2. 배우자에게 배우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3.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85세 이상인 유공자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배우자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지정한 예금 계좌의

변경 등 변경신고사항이 발생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1월 중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6조의2(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원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명예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참전 유공자의 범위) 참전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p>제1조(목적) ----- ----- ----- 따른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 및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및 배우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함. 이하 같다)를 말한다.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금 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이하 “미망인”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및 그 유족인 배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공자

제3조(지원대상) -----

-- “배우자”-----

-----.

제4조(지원사업) ① -----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미망인에게 미망인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3. 4. (생략)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만85세 이상인 유공자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 명예수당과 미망인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

-----.

1. (현행과 같음)
2. 배우자에게 배우자 -----

3. 4. (현행과 같음)

② -----85세 이상인-----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 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배우자 -----
----- 별지 제1호서식-----

-----.

② -----
----- 별지 제2호서식-----

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사람 중 지정된 예금 계좌의 변경 등 변경신고사항이 발생한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생략)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 단서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6조의2(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급대상자가 지원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급받는 -----

----- 별지 제3호서식 -----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3조 -----

-----.

제6조의2(지급중지 및 환수)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밝혀진 --

② (현행과 같음)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여 수 시 장

2023. 5. 9



여수시 조례 제1880호

붙임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80호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여수시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 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제1항 “정의는” “뜻은”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라 함은”은 “란”으로,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자”를 “사람”으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은 “란”으로,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자로 법 제4조 규정”을 “사람으

로 법 제4조”로 한다.

제3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시장”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 규정”을 “법 제8조”로 하고, “(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규정”을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내에서다음 금액이하”를 “내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이하”로 하고, “가. 1급,2급 : 1천500만원을 나 3급,4급 : 1천만원 다.5급,6급 : 500만원”을 가. 1급 1천500만원 나. 2급 1천320만원 다. 3급 1천 140만원 라. 4급 900만원 마. 5급 780만원 바. 6급 600만원 사. 7급 300만원 아. 8급 150만원 자. 9급 75만원으로 변경 또는 신설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법 제10조 규정을”을 “법 제10조를”로 한다.

제5조 중 “희생정신과용기가”를 “희생정신과 용기가”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5조 규정”을 “법 제5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사상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 한다”을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규칙으로 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여수시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 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 1천 500만원

나. 2급 : 1천 320만원

다. 3급 : 1천 140만원

라. 4급 : 960만원

마. 5급 : 780만원

바. 6급 : 600만원

사. 7급 : 300만원 <신 설>

아. 8급 : 150만원 <신 설>

자. 9급 : 75만원 <신 설>

3.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5. 시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6. 시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7.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보조

8.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9.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 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

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여수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타인의 위</u> 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u>자와 그 가족및사망한 자</u>의 유족에 대하여 「<u>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u>」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u>예우이외에</u> 여수시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u>자의 숭고한정신과</u>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 사회 정의구현에 <u>이바지함을목적</u>으로 한다.</p> <p>제2조(<u>용어의 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과 같다.</p> <p>1. “<u>의사자</u>“<u>라 함은</u> 직무외의 행</p>	<p><u>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다른 사람</u>----- ----- ----- <u>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u>예우 이외에</u> ----- ----- <u>사람의 숭고한 정신과</u> ----- ----- -----<u>이바지함을 목적</u>----- -----.</p> <p>제2조(<u>정의</u>) ----- -----<u>뜻은</u>----- ----- -----.</p> <p>1.-----<u>란</u>-----</p>

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을 입은 자로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리를 두고 있는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외에 주소리를 두고 있는 주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다른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

2. -----란-----

----- 다른 사람-----

----- 사람으로 법 제4조 -----

제3조(적용범위) -----

-----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

우에 적용한다.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삭 제>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삭 제>

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 등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삭 제>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 등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삭 제>

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삭 제>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여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 15조 규정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다음 금액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제4조(지원사업 등) <삭 제>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1. ----- 법 제8조에 따른 -----

2. ----- 법 제8조-----

-----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내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이하

가. 1급 : 1천 500만원

나. 3급, 4급 : 1천만원

다. 5급, 6급 : 500만원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준용 등)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나. 2급 : 1천 320만원

다. 3급 : 1천140만원

라. 4급 : 960만원

마. 5급 : 780만원

바. 6급 : 600만원

사. 7급 : 300만원

아. 8급 : 150만원

자. 9급 : 75만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 제10조를 -----.

제5조 -----

희생정신과 용기가 -----

-----.

제6조(지원신청) -----
----- 법 제5조-----

-----.

제7조(준용 등) ①-----

「의사상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
-----정한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 월 9 일

여 수 시 장

장기영



여수시 조례 제1881호

붙임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1부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법 제14조에 따라 여수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30명 이내로 하며, 읍·면·동별 1명 이상 두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아동위원의 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임무와 운영)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2.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 협력하여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등 파악

3.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과 협력
4. 아동 학대 신고, 현장 조사 협조 등 아동 학대 예방 활동
5. 그 밖에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아동복지 관련 사항이나 아동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 본인이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아동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아동 인권 침해, 사생활에 관한 비밀 누설,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아동위원의 교육) 시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여 수 시 장

2023/11/27



여수시 조례 제1882호

붙임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을 포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의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부모의 임신 · 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여 수 시 장

정기명



여수시 조례 제1883호

붙임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 1부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여수교육지원청 또는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제1항 중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을 “**위원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 한다.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4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을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여수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 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여수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
<신 설>	<p>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 style="padding-left: 2em;">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p> <p style="padding-left: 2em;">나. 여수교육지원청 또는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p> <p>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p>

	<p>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p> <p>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p>
<p>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 ----- -----.</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 -----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신 설></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p>

	<p>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회의) ① -----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② 위원회의 심의는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보호조치 후 사후에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④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p>제7조(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

	<p>장이 지명하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p> <p>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p>
<p>제5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회의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p> <p>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p>	<p>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p> <p>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 ~ 제9조 (생략)</p>	<p>제8조 ~ 제11조 (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p>
<p><신설></p>	<p>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0조 (생략)</p>	<p>제13조 (현행 제10조와 같음)</p>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여수교육지원청 또는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한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 월 9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1884호

붙임 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 월 9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885호

붙임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제4조(지원 기준)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려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대장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여수시 거주기간			
	전화번호		휴대폰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육아휴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인 <small>(*지원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안함)</small>	성명		지원대상자와 의 관계	
	주소		휴대 폰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연번	신청일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자녀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은행명)	육아휴직 기간	지급일	지급액	비고
		성명	생년월일	거주기간 (년, 월)	성명	생년월일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스마트
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여 수 시 장

2023. 5. 9.



여수시 조례 제1886호

붙임 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마트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어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어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어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어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어업 기술의 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그 밖에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어업 지원) 시장은 스마트어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어업 관련 신사업 육성
2. 스마트어업 생산기반시설(양식업 시설을 포함한다) 정비
3. 스마트어업 관련 가공·유통 시설의 구축 및 운영
4. 스마트어업 기술의 보급
5. 스마트어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그 밖에 스마트어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어업 도입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어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어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어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어업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산림
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 월 9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887호

붙임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산림교육 연구사업
4.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4.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5. 산림교육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③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용이하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육장 및 실습장 확보, 편의시설, 전문가 지원, 안전시설 및 안전보험 가입 등의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산림교육 전문가 관리 등)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자원을 파악·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 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여수시 산림교육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 프로그램 관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체험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 추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산림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9 일

여 수 시 장

2023.5.9



여수시 조례 제1888호

붙임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1부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휴게 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정자”란 주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야외 정자(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야외 정자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 정자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 정자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건설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 정자를 마을회관, 임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야외 정자를 설치·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야외 정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 정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관리주체) 야외 정자의 관리주체는 야외 정자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설치장소) ① 야외 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2. 여수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문화재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야외 정자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 정자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 정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 정자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 정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야외 정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야외 정자를 설치 또는 철거 완료 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정자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의 파손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의 위탁) 시장은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정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희귀
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1889호

붙임 여수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여수시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 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희귀질환의 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희귀질환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여 수 시 장

장기영



여수시 조례 제1890호

붙임 여수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6세 이하 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 중 여수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시행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비용지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체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책정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3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접종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한다.

② 시장은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여 수 시 장

8257122



여수시 조례 제1891호

붙임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 어 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인 건강증진과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여수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1호 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어업인들이 공동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마을대표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마을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2. 마을공동급식 대상 농어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제6조(지원기간)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에 운영하되 작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마을 공동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신청)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식단표
5.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9조(마을공동급식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여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을 갖추어 시

장에게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양봉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여 수 시 장

김기호



여수시 조례 제1892호

붙임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여수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
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
4. 상표개발 및 등록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
6.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
7.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양봉 전업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고,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여 수 시 장

김기민



여수시 조례 제1893호

붙임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하고, 제47조를 제48조로 하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제47조의2를 제48조의2로 한다. 제5장에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시장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계량기 이후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u> <u>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u> <u>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u> <u>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u> <u>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시장</u> <u>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u> <u>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u> <u>다.</u></p> <p><u>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u> <u>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u> <u>우에는 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u> <u>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u> <u>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u> <u>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계량기 이</u> <u>후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u> <u>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u> <u>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u> <u>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u> <u>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u> <u>다.</u></p> <p><u>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u> <u>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u> <u>경우</u></p>

제41조 ~ 제48조 (생 략)

제49조 (생 략)

제50조 · 제51조 (생 략)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 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 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2조 ~ 제49조 (현행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와 같음)

제50조 (현행과 같음)

제51조 · 제52조 (현행 제50조 및 제51조와 같음)